



| 보건복지부 | 보 | 도 참 | ュ | 자 료 |
|-------------|------------------------|-------|-----|--------------|
| 배 포 일 | 2020. 8. 16. / (총 12매) | | | |
| 중앙사고수습본부 | 팀 장 | 박 은 정 | | 044-202-1711 |
| 전 략기 획 팀 | 담 당 자 | 한 연 수 | | 044-202-1714 |
|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 팀 장 | 김 성 훈 | 전 화 | 044-200-2293 |
| 기획총괄팀 | 담 당 자 | 박 현 수 | 건 약 | 044-200-2295 |
| 문화체육관광부 | 과 장 | 강 대 금 | | 044-203-2211 |
| 기획혁신담당관 | 담 당 자 | 김 유 미 | | 044-203-221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추어 각종 채용·자격시험이나 결혼식 세부 방역 지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신속히 조정하여, 무엇이 변경되는지 등을 국민들께 바로바로 알려드릴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공동방역체계 하에 현 상황을 대응해야 한다면서, 방역당국과 수도권에서는 △신속한 정보공유체계 △병상·생활치료센터의 공동활용 △의료인력 상호지원 상황을 다시점검하여 최악의 상황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번 교회발 집단감염은 신천지 사태보다 양성률이 높고 n차 전파 가능성이 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검찰· 경찰청에 교회 제출 명단의 허위 또는 누락, 역학조사 방해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랑제일교회의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고 강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재파악이 안 된 사람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주거지를 방문 조사하는 등 검사와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8월 15일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법회 외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증환자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도 추가로 확보**해 가고 있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 16일부터 고위험 시설의 집합제한 명령 이행여부, 학원·오락실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m²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 ▲영화관 ▲목욕탕·시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경기도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와 교인에 대해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와 격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8월 15일 종교시설 등 55,196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발동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집합금지로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 등에 대한 구상 청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 종교시설(15,778), PC방(4,389), 학원(22,973), 교습소(9,889), 다방(1,300), 목욕장(867)
- 이와 함께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일간 종교시설, 영화관, 실내체육, PC방 등 5,52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 □ 정부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와 방문자를 파악**하는 한편 **환자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 현재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가동률과 생활치료센터** 입소공간은 여유*가 있으나, 급증하는 환자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 : (서울) 30.2%, (인천) 29.7%, (경기) 64.0% 생활치료센터(8.15. 기준) : 현재 2개 시설 정원 440명에 입소 31명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확산을 통제하지 않는 다면 전국적인 전파,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8월 15일 서울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문체부,농림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분 | 본부에서는 | 문화체 | 육관광부(장 | 관 박양우). | 로부터 |
|-----------|-------|-----|--------|---------|-----|
| 서울·경기 사회적 | 거리 두기 | 2단계 | 후속조치를 | 보고 받고 | 이를 |
| 점검하였다. | | | | | |

- □ 정부는 변화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8월 14일부터 배포하는 숙박, 여행, 공연 등 6대 소비할인권*의 시기를 조정한다.
 - * 숙박(8.14.~), 여행(8.25.~), 공연(8.24.~), 영화(8.14.~), 전시(박물관 8.14.~, 미술 8.21.~), 체육(8.24.~)
 - 미 배포된 할인권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배**포를 잠정 중단**하고, 기 배**포분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을 허용한다.
 - 실 사용기간이 9~11월인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실사용 기간 조정을 검토한다.
 - 영화의 경우 8월 14일부터 기 배포된 할인권은 8월 17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박물관 전시 할인권도 이미 배포된 200여 장은 사용할 수 있다.
 - 8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 예정이었던 미술 전시 할인권, 공연 할인권, 민간실내체육시설 할인권은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
 - 숙박과 여행 할인권은 예약 시기(▲숙박은 8월 14일부터, ▲여행은 8월 25일부터)와 실제 사용 시기(▲숙박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 ▲여행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가 달라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추후 필요 시실제 사용 기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16개소**는 방역 지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존과 같이 시간당 수용가능인원의 최대 30%, 공연시설은 최대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을 지속하되,
 -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관람 중심 운영, 시간대별 인원 조정, 사전예약제 시행 등의 방역조치도 병행한다.

< 국립문화예술시설 >

| 국립박물관(3) |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 | | |
|------------------|---|--|--|--|
| 국립미술관(3) | 국립미술관(3)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 | | |
| 국립도서관(2)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 | | |
| 국립·산하 공연시설(8) |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극장 판), 아르코·대학로 극장 | | | |

- □ 서울과 경기 지역 총 11개 경기장*의 프로스포츠 행사는 8월 16일부터 무관중으로 시행되며, 경기에 대한 기 예매분은 전부 수수료 없이 취소 조치된다.
 - * 야구(잠실, 수원, 고척), 축구(서울 잠실·상암, 수원 종합·월드컵, 안산, 안양, 성남, 부천)
 - 이와 함께, 지역축제 역시 가급적 취소, 연기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제한 권고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 또한, 새롭게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피시(PC)방과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등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속 현장 점검하며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 8월 14일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주관 **외식 활성화** 캠페인도 8월 16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8월 16일 0시 **이전까지의 외식 실적**은 추후 캠페인 재개 시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 연휴기간 동안 **카드사별 시스템 조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실적 통보·조회** 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 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 당초 동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 < 붙임 > 1. 국민 행동 지침
 -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관련 FAQ
 - 3.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1

국민 행동 지침

[국민 행동 지침]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 ②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③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용 등) **하지 않기**











붙임2

서울 ·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관련 FAQ

Q1. 8월 16일부터 결혼식과 같은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인가요?

- 집합·모임·행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향후 2주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임
-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
-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할 예정임

Q2. 노래연습장과 같은 고위험시설도 바로 운영이 중단되나요?

-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2주간은 기존에 시행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
 -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리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8.19~)
- 방역 강화를 위해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추가 수칙을 의무화하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
-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임











Q3. 모든 식당과 카페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식당 내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중 일정 규모 이상(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을 초과 하는 곳이 방역수칙 의무화의 대상임
- 다만,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예정

Q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휴원 또는 휴교하는 건가요?

-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유치원은 총 인원의 1/3 수준으로 등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
-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고, 이외 서울·경기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

Q5.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다는데, 위험성이 줄지 않았나요?

-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치명률이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
 - 8월 15일까지의 치명률을 분석해 보았을 때, 70대의 경우 감염자 10명 중 1명이, 80대의 경우 감염자 4명 중 1명이 사망
- 고령층의 경우 밀집·밀폐·밀접 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과 노래부르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특히 주의**하고,
 -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











참고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6~)

| 구분 | | | 조치사항(서울, 경기) | | |
|----|--------------|----|---|--|--|
| | 집합· 모임·행사 |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집합금지 | | |
| | 스포츠 행사 | | ○ 무관중 경기 전환 | | |
| |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객 제한 등(평상시 50% 수준) →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 |
| | | 민간 | ○ 고위험시설 | | |
| | | | - 기존 집합 제한 유지 및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 방역수칙 추가, PC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전국 적용) | | |
| | | |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운영 중단 | | |
| | 다중 | |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 | |
| 조치 | 시설 | |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 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 |
| | | |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
| | | | - 종교시설은 서울·경기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旣시행 (8.15~) | | |
| | |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 |
| | 학교 | | O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권고 | | |
| | | | O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 |
| | 기관, 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 | |
| | |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
| 기타 | | 타 | ○ 서울·경기 주민의 타 시·도로 이동 제한 권고 | | |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